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368 발의년월일: 2017. 6. 9.

발 의 자 : 김순점 의원(대표발의)

서경환, 김영길, 신성봉, 천병태, 이효상 권태호, 강혜순, 김경환, 이복희, 오세라

1. 개정사유

○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 호 수집 대상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
 - ▶ 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 ⇒ 생년월일 (안 별지 제1호 서식)

3. 근거법규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- 4. 개정조례 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"따로 붙임"

5. 참고사항

○. 입법예고 : 2017. 6. 14 ~ 6. 20(7일간), 의견없음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 적 조 서 (1)성 명 (한자) 원명 (2)생년월일 (3)군번(군인의 (4)국 적 (외국인에한함) (5)주 소 (6)직 업 (7)소 속(주소)	(앞면)		
(2)생 년 월 일 (4)국 적 (외국인에 한함) (5)주 소			
(2)생 년 월 일 (4)국 적 (외국인에 한함) (5)주 소	경우)		
(4)국 적 (외국인에 한함) (5)주 소			
(5)주 소			
(6)직 업 (7)소 속(주소)			
(8)직 위 (9)등급(직급, 계급) (10)근무기	(10)근무기간(수공기간)		
(11)공적요지(50자 내외) (12)공적분야코드			
(10) 7 3 8 7 (14) 7 3 8 0			
(13)추천훈격 (14)추천순위			
조 사 자			
(15)소 속 (16)직 위			
(17)직 급 (18)성 명	(인)		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추천관 직위 성명	직인		

			(뒷면)						
	주 요 학 학	역 및 경 력							
(19)년 월 일	(20)이 력	(21)년 월 일	(22)이 력						
과거 포상기록(훈장.포상.표창별로 기록)									
(23)년 월 일	(24)내 용	(25)년 월 일	(26)내 용						
(27)공 적 사 항									

		신	·구조	문대비화	臣		
	현	행			개 >	성 안	
[별지 제1호 서식]	공 적	조 서		[별지 제1호 서식	공 적	조 서 ^{면)}	
(1)성 명		(한자 원명)	(1)성 명	(37	<u>'면)</u>	(^{한자}) 원명)
(2) <u>주민등록번호</u> <u>(생년월일)</u>		- (3)군	번(군인의 경우)	(2) <u>생 년 월 일</u>		(3)군	번(군인의 경우)
(4)국 적 (외국인에 한함)				(4)국 적 (외국인에 한함)			
(5)주 소 (6)직	<u> </u>	(7)소	속(주소)	(5)주 소			1 (7.1)
(0)4	Ħ	(7)1	7(14)	(6)직	업	(7)소	속(주소)
(8)직 위	(9	_)등급(직급,계급)	(10)근무기간(수공기간)	(8)직 위	(9)등급([직급,계급)	(10)근무기간(수
			7 0 12				공기간)
(11)공적요지(50	자 내외)	(12)공적분야코모	=	(11)공적요지(5	0자 내외) (12)공적분야코드	
(13)추천훈격		(14)추천순위		(13)추천훈격	I.	(14)추천순위	
	조 ,	 사 자		(13) 구신군식		· 사 자	
(15)소 속		(16)직 위		(15)소 속		(16)직 위	
(17)직 급		(18)성 명	(인)	(17)직 급		(18)성 명	(42)
Ç	니 위의 기록이 틀림	 없음을 확인 합니	'		 위의 기록이 틀림(없음을 확인 합니	(인) 다.
	년 .	월 일			년 4	월 일	
추천관	직	성명	직인	추천관	직	성명	직인
주 요 학 력 및 경 력 <u>(뒷면)</u>							
(19)년 월 일	(20)이 력	(21)년 월 일	(22)이 력		주 요 학	벽 및 경 력	
(11) [[]	(22) 1	(11)	(==,	(19)년 월 일	(20)이 력	(21)년 월 일	(22)이 력
과 グ	l 포상기록(훈장.	포상.표창별로 기	록)			# 1 # 2 W = -1	= \
(23)년 월 일	(24)내 용	(25)년 월 일	(26)내 용	(23)년 월 일	거 포상기록(훈장 . (24)내 용	포상.표장별도 기 (25)년 월 일	(26)내 용
				(23)전 월 월	(24)41 8	(23)전 필 필	(20)41 8
	(27)공 조	석 사 항			(27)공	 적 사 항	

근 거 법 규

개인정보 보호법

행정자치부(개인정보보호정책과), 02-2100-4105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-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-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의 안 번 호

1368

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6. 9.(금)

나. 제 출 자 : 김순점 의원 외 10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0.(월)

2. 제**안설명 요지**(김순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별지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
 - : 안 별지 제1호서식
 - "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" ⇒ "생년월일"

다. 근거법규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정미옥)

- O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,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작성에 있어 "주민등록번호"를 기재하도록 하는 란을 "생년월일" 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.
- O 조례입법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